www.wesay.or.kr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안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SEXUALTY ABOUT THE YOUTH

CONTENTS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 0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 06

···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08

···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 14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시설 | 15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란?

- 19세 미만의 자,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2018년 기준 : 2000. 1. 1. 이후 출생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 **내　　용**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 301조의 2, 제302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범죄유형별 분포〉

(단위 : 명(%))

죄명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알선	기타 (음란물 제작 등)	계
가해자 기준	647(22.4)	1,761(61.1)	173(6.0)	72(2.5)	153(5.3)	78(2.7)	2,884(100.0)
피해자 기준	708(18.0)	2,501(63.4)	213(5.4)	104(2.6)	308(7.8)	108(2.7)	3,942(100.0)

■ 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가해자 수는 2,884명이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942명임. 피해자수가 가해자수보다 많은 것은 한 명의 가해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행했다고 볼 수 있음

〈범죄유형별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구분〉

(단위 : 명(%))

피해자 연령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성매매강요	성매매 알선	음란물 제작 등	
6세 이하	5(0.7)	92(3.7)	0(0.0)	0(0.0)	0(0.0)	8(7.4)	105(2.7)
7~12세	82(11.6)	554(22.2)	13(6.1)	0(0.0)	0(0.0)	19(17.6)	668(16.9)
13~15세	273(38.6)	643(25.7)	124(58.2)	57(54.8)	146(47.4)	25(23.1)	1,268(32.2)
16세 이상	348(49.2)	1,105(44.2)	74(34.7)	47(45.2)	162(52.6)	24(22.2)	1,760(44.6)
미상	0(0.0)	107(4.3)	2(0.9)	0(0.0)	0(0.0)	23(29.6)	141(3.6)
계	708(100.0)	2,501(100.0)	213(100.0)	104(100.0)	308(100.0)	108(100.0)	3,942(100.0)

* 판결문상 정확히 명시된 피해자만 해당함.

–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6세로 전년도(14.3세)와 비슷함

- 전체 피해자의 19.7%가 13세 미만의 피해자이며, 범죄유형 중 강제추행범죄는 13세 미만 피해자의 비율이 25.9%로 가장 높음
-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의 경우, 16세 이상의 집단에서 성매수, 성매매 강요는 13세~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음란물 제작 등의 경우는 6세 이하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 고루 분포하였으며, 특히 전체 피해자 중 7~12세가 19.2%, 6세 이하가 8.1%로 나타나 아동들이 음란물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강제추행이 83.6%, 강간이 11.3% 순으로 나타남. 13세 이상 성범죄는 강제추행 57.7%, 성매매 알선이 20.1% 순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범행특성〉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51.6%, 가족 및 친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 34.1%, 가족 및 친척이 10.5%를 차지함

(단위 : 명(%))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	범죄유형		계
	강간	강제추행	
전혀 모르는 사람	201(28.4)	1,455(58.2)	1,656(51.6)
아는 사람	314(44.4)	779(31.1)	1,093(34.1)
가족 및 친척	134(18.9)	204(8.2)	338(10.5)
미상	59(8.3)	63(2.5)	122(3.8)
계	708(100.0)	2,501(100.0)	3,209(100.0)

■ **범행횟수**

- 폭력 범행이 1회성인 경우가 75.9%로 나타났으며,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는 23.8%로 나타났음

■ **범행발생장소**

- 13세 미만의 아동이 청소년에 비해 집, 주택가 및 이면도로, 학교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명(%))

범행장소	범죄유형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집	223(30.5)	563(23.8)	786(25.3)
주택가 및 이면도로	77(10.5)	120(5.1)	197(6.4)
학교	67(9.2)	194(8.2)	261(8.4)
주차장	10(1.4)	21(0.9)	31(1.0)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	939(12.7)	593(25.0)	686(22.1)
야외, 거리, 산야, 대중교통시설 등	125(17.1)	508(21.4)	686(22.1)
(공중)화장실	16(2.2)	78(3.3)	94(3.0)
자동차 안	25(3.4)	109(4.6)	134(4.3)
학원 및 보육시설	32(4.4)	51(2.2)	83(2.7)
기타	64(8.7)	133(5.6)	197(6.4)
미상	64(8.7)	133(5.6)	197(6.4)
계	732(100.0)	2,370(100.0)	3,102(100.0)

■ **범행발생시간**

- 13세 미만 대상의 성폭력범죄는 오후시간(15시~17시)에, 13세 이상 대상 성폭력범죄는 심야시간(21시~23시)에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인방법**

-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친분으로 유인한 경우가 1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질문(8.5%), 애정·칭찬(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출처 : 여성가족부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2016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제도 개요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의무 대상시설 및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 대상시설**

유치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학교 (초중등학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료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학원 및 교습소	대학 ('18.7.17. 신규 추가)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및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는 전국 소재 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아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연계

신고의무 위반 시 조치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신고의무제도 Q&A

Q1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추행사건 등이 일어나서 시설장에게 보고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모두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종사자 및 보고를 받은 시설장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신고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그 즉시 인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조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Q3 2005년에 기관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만 상담과 치료를 받게 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나타나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이 2006년 6월 30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며,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는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기관에 범죄 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신고의 방법은 112신고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연락 등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실관계 등 수사가 개시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기록이 남는데 신고의무자는 실제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의 성범죄 사건으로 유무죄 확정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5 피해자 측에서 신고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신고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Q6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우리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이들이라 신고하기가 난처합니다. 가해아동이 13살과 15살인데 신고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15세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13세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18.7.17. 기준)

취업제한제도 개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대상자

■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18.7.17.부터 시행)

■ 종전('18.7.17.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부칙 적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06.6.30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 자

※ 부칙 :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취업제한기간 및 적용시점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10년간 취업제한)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취업 제한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전('18.7.17.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차등적용(부칙 제4조)

* 종전 형확정자의 부칙 적용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구 분	종전 형 확정된 자		개정법 시행 이후 형 확정된 자
	'06.6.30. ~ '09.12.31.	'10.1.1. ~ '18.7.16.	'18.7.17 이후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5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5년	법원이 형선고시 취업제한 명령선고 (최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형 확정된 날부터 3년	형 집행이 종료(유예)된 날부터 3년	
벌금형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형 확정된 날부터 1년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치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등)
학교 (초중등학교, 위탁교육기관)	경비업 법인 (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직접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만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대학 ('18.7.17. 신규추가)
어린이집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18.7.17. 신규추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	취약계층아동대상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18.7.17. 신규추가)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지원시설	장애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제공 기관·단체 ('18.7.17. 신규추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중 행정안전부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설 ('18.9.14. 신규추가)
체육시설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만 해당)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18.9.14. 신규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취업(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경력 조회의무**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함

※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 신청 후 성범죄경력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조회 한 것으로 갈음

※ 운영하려는 자의 경우는 해당 지자체장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회 조회

■ **구비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취업자(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력 조회방법** :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 및 온라인 조회 신청 (범죄경력조회시스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1. 경찰서(형사과)에 직접 신청하여 조회 (오프라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 취업(예정)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아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형사과)에 동의서를 첨부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

취업예정자

-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아 '성범죄경력조회신청서' 작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작성
-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경찰서 (민원실 또는 형사(수사)과)에 제출

해당경찰서 담당자

- 관할 경찰서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에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회신

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조회(온라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 가능
   - 취업(예정)자의 동의(취업예정자가 직접 공인인증처리)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신서 확인

기관(시설)장의 시설정보 사전등록

사이트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 정보등록 (사업자 등록증 등) → 기관(시설)ID부여, 검증번호 등록

취업(예정)자 동의

사이트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 정보 확인 → 동의서 작성 (기관 ID, 검증번호 입력) → 본인 인증 → 동의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

사이트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동의목록 확인 → 기관(시설)장 신청 → 발급

※ 성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실시(24시간 신청 가능)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본인**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경찰서(형사과 등)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취업(운영)중인자 조회 (점검 확인 의무)

■ 행정 기관은 연1회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점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

■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 위반회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이상 위반 : 500만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즉시해임

※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운영자 변경 및 기관 폐쇄 요구

※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장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취업제한제도 Q&A

Q1 성범죄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고용형태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일일 강사 포함) 등이 모두 해당되며,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차량기사, 용역업체 직원, 교생실습자 등도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인은 경비업무 종사자만, 의료기관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취업이 제한됨

Q2 취업제한제도는 2006.6.30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전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 2006년 6월 30일 이전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06년 6월 30일 이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또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성범죄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하더라도 2006년 6월 30일 이전의 성범죄는 '성범죄 경력 없음'으로 회신되므로 취업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 중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발견 즉시 해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업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당초 취업을 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 결과 성범죄 경력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나 취업한 이후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해임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영자가 성범죄경력으로 적발될 경우 운영자 변경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촉을 차단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운영자변경이 어려운 경우 기관폐쇄 등을 조치하여야 합니다.

Q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은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에 따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청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동의서 없이도 성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여부를 확인 후 취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확인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 취업예정자의 경우는 취업 근무일 이전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근무를 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관련기관에 근무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Q6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경력 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나요?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내역에 대해서만 회보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는 다르므로 성범죄경력조회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Q7 2012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포함되었는데 의료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이에 해당되며,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사무직 직원 등은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8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국인의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만 알 수 있습니다.

Q9 자원봉사자와 공익근무요원은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가 되나요?

≫ 자원봉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 다만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없어 경력조회 대상이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사실상 노무제공자에 해당되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여야 하며, 경력 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병무청에 해당 공익근무요원의 재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Q10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개인과외 교습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회신시) 교육기관의 장임을 어떻게 확인하여야 합니까?

≫ 현재 학원법에는 대학(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 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라는 확인서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 교습자'라고 본인이 신청하면 학생증을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Q1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됩니까?

≫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 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12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근무 중인 자에 대해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 해고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우선 채용하고 사후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Q13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누가 하나요?

≫ 과태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이 부과·징수합니다.

Q14 성범죄경력 조회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해야 하는지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및 운영여부를 점검·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점검 의무

○ (채용전 확인)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및 관할 행정 기관은 취업 예정자·운영 예정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 등에 대해 채용전 성범죄경력 확인(법 제56조제3항)

○ (채용 후 점검) 행정 기관은 연1회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점검(법 제57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제도

■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기관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5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개 및 고지 대상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개정보 및 고지정보

■ **공개정보 :**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 **고지정보 :** 공개정보와 동일.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정보를 포함하여 고지

공개 및 고지명령의 집행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

공개 및 고지정보의 열람방법

■ 공개정보는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앱(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지정보는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및 기관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의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설치

IOS 설치

고지정보의 정정

■ 누구든지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7.17. 이후)

공개정보의 악용 금지

-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공개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공개대상자의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시설

헬프콜 청소년 상담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1388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 교우관계, 학업성적, 진로 등 고민이 있을 때, 가정·학교 폭력, 성폭력·성매매 피해 등을 당했을 때, 가출해서 갈 곳이 없을 때,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을 때, 청소년 구조 등 기타 도움이 필요할 때 등 365일 24시간 상담 제공

국번없이 1388 / 일반전화: 1388 (또는 110)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또는 110) / 문자상담: #1388

수사기관(경찰서)

국번없이 112

여성긴급전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1차적 긴급지원센터로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상담 및 피난처를 제공하고 전문 상담소,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병원,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 여성을 지원

국번없이 1366
또는 1366을 통하여 각 지역별 센터 안내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해바라기센터-

- **위기지원형** : 위기상담 및 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모든 성별) 위기상담, 수사, 법률 의료지원 제공(365일 24시간)
- **아동·청소년형** : 지속상담 및 치료 – 성폭력피해자와 가족(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모든 연령·성별의 지적장애인) 지속상담, 법률, 의료, 심리치료 제공(월~금, 09시~18시)
- **통합형** : 위기지원 및 지속지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와 가족(모든 연령, 모든 성별) 위기상담, 지속상담, 수사, 법률, 의료, 심리치료 제공

02-735-750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며 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

02-558-1391

한국성폭력상담소

- 상담을 통한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제언 활동, 정책 감시 및 비판, 성폭력 통념을 깨기 위한 출판사업과 대중교육 등 반성폭력운동

02-338-5801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국번없이 132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직접적인 지원활동(의료지원, 법적지원 등) 및 장애여성 인권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제안 활동 등

02-3013-1399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및 대안 마련
-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 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
- 성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성교육 센터로서 인프라 구축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실시

전국 각 지역 (뒷면 참고)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서울	광진	02-2204-3170
	동작	02-823-7942
	드림	02-2051-8600
	송파	02-3012-1318
	아하	02-2677-9220
	중랑	02-2207-7480
	창동	02-950-9651
	탁틴내일	02-338-8042
인천	인천광역시	032-446-1318
	부평구	032-500-2251
경기	경기도	031-475-3253
	경기도이동형	031-405-3255
	경기북부	031-954-8050
	경기북부이동형	031-953-8052
	부천시	032-663-1318
	수원시	031-251-1822
	안양시이동형	031-360-3088
	용인시	031-548-1318
	화성시	031-8015-3900
강원	강원도	033-255-6651
	강원도이동형	033-255-6651
	강릉시	033-645-1318
	원주시	033-745-1318
대전	대전광역시	042-222-8847
	대전서부	042-520-5088
충북	충청북도	043-258-8001
	충북이동형	043-258-8001
	충주시	043-856-7816
충남	충청남도	041-592-1388
	충남이동형	041-337-1585
	충남홍성	041-406-7000

광주	광주광역시	062-522-1388
	광산구	062-973-9553
전북	군산시	063-463-1230
	전주시	063-251-1318
	정읍시	063-532-1388
	익산시	063-834-1399
전남	전라남도	061-554-1318
	목포시	061-272-1318
	순천시	061-745-0222
	여수시	070-7733-1319
대구	대구	053-653-7755
	대구아름	053-657-1388
울산	울산광역시	052-256-1318
부산	부산	051-303-9622
	늘함께	051-558-1224
	탄생의신비관	051-508-1808
	탄생의신비관이동형1	051-508-1308
	탄생의신비관이동형2	051-508-1802
경북	경상북도	054-436-0218
	경북이동형	054-858-7179
	경북북부	054-858-7179
	포항	054-246-1004
경남	경상남도	055-832-9273
	경남이동형	055-716-0318
	창원시	055-716-0311
제주	제주시	064-728-3486
	서귀포시	064-760-6451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SEXUALTY ABOUT THE YOUTH

TEL 02-3144-1223 HOME www.wesay.or.kr